

국립종자원 종합감사결과 공개문

2018. 9.



농림축산식품부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21조(실지감사)의 규정

2. 감사목적

- ☐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자 생산·공급 및 유통관리 실태 등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

3. 감사대상

- ☐ 국립종자원 본원, 3개 지원
 - (본원) 전 부서, (지원) 전남, 경남, 서부

4. 감사범위

- ☐ 최근 3년간(2015년~현재)의 기관운영, 사업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5. 감사기간 및 인원

- ☐ 감사기간 : 2018.2.26.~3.16.(13일 간, 3.2제외)
-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6명

II. 감사결과

일련번호 1		직원 경조사 참석 및 국내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운영기획과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와 충북·전북지원은 소속직원 경조사에 약간 명(1~2명)을 초과하여 경조사 건당 총 3명을 근무지의 출장처리하고 여비 지급(15명 450,000원)
- 국내출장 시 다른 재원에 의한 정부지원으로 식비를 지출한 경우 여비를 통한 식비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한 끼 당 1일 식비 중 1/3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 종자원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출장 시에 법인카드로 식비를 지출하였음에도 317건에 대해 식비 2,299,230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

국립종자원

- ① 경조사 참석 출장 관련 복무규정에 정한 약간 명(1~2명)의 기준을 초과하여 출장 조치함에 따라 지급된 여비(450,000원)는 재정산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회수 요구 (시정)
- ② 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된 여비 2,299,230원 회수 요구 (시정)

일련번호 2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운영기획과, 식량종자과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목적물을 인수하는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정하여야 하는데도 그 이전 또는 이후부터 설정
 - 최근 3년간 전체 250건 72,743백만원 중 148건 7,637백만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적정하게 설정

국립종자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일련번호 3		공사비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운영기획과, 식량종자과

-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하고 지급

국립종자원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료 2,142천원, 안전관리비 2,741천원, 환경보전비 200천원에 대해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재정산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 요구 (시정)

일련번호 4		공무국외여행 심사 등 미흡	
처분요구	권고, 개선	관계기관	종자산업지원과

-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개최 시 종자원 전체 국외여비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심의하지 않고, 종자산업지원과 국제협력 분야 여비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만 연간운영계획을 수립 심사
- 2010.5.18.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정 이후 2018.3월 현재까지 개정 되지 않아 현재 종자원의 조직 및 사무분장과 다르게 규정 되어 있음

국립종자원

- ① 종자원 전체 국외여비에 대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요구 (권고)
- ②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을 현 조직 및 사무분장에 맞게 개정 요구 (개선)

일련번호 5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 운영방식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종자산업지원과

- 출품주체 중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출품주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화 필요
- 우수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배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통령상 선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 3명이 평가한 각 분야별 1순위(총 5개 품종)만을 대통령상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11명의 종합심사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평가결과가 절대적으로 작용되어 심사대상 범위 확대 필요
- 분야별로 1, 2차에 대한 심사를 위한 평가지표가 대부분 정성지표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위원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상대적으로 객

관성이 떨어지므로 정량지표 개발 필요

- 2차 현지심사 시 운영을 일반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없고, 용역계약도 2017년도에는 3. 29. 체결, 2018년도에는 3. 16. 현재 현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 지연

국립종자원

- ① 출품주체를 명확화 하고, 대통령상 심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구 (개선)
- ② 정량지표 개발, 심사위원 평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지심사 평가 전 용역계약 체결 등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6	2016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PSA) 한국총회 예산 배정·정산 등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종자산업지원과

- 보조사업자인 (사)한국종자협회에서는 총사업비 1,220백만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서(예산 집행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종자원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 종자원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을 해주고 보조금 교부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자부담 집행상황을 확인한 후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나,
 - 종자원은 총사업비 1,220백만원이 아닌 국고 560백만원에 대한 집행계획만 승인하였으며, 교부결정 시에도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8. 1차로 국고 560백만원 중 300백만원, 2016. 7.

15. 2차로 260백만원을 교부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또한, 종자원은 총사업비 1,220백만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나, 국고 560백만원에 대해서만 정산 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동 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국가 귀속 등)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나,
 - 종자원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APSA 한국총회」 개최를 위해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잉여금 294백만원(후원금 포함 시 445백만원)을 (사)한국종자협회로 귀속되는 결과 초래

국립종자원

- ①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주의” 조치 요구 (주의)
- ② 사업담당자에 대해 예산집행 및 정산 실시 요령(잉여금 처리 방안 포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7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조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개선	관계기관	종자산업지원과

- 유전자변형생물체 시료 검정시 시료는 각 모집단인 조사지역 별로 5개 부위에서 채취하여 혼합한 후 1점으로 하여 검정을 하여야 하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조사 시 면화·유채는 각 모집단인 지역별 5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검정
-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조사를 위한 재배중인 식물체 시료수거 시 모집단별 15개체를 수거(수거량 부족)함으로써 모집단이 커질수록 시료

의 대표성 결여

국립종자원

- ① 면화·유채 등은 모집단인 조사지역별 채취한 시료를 혼합하여 1점씩 검정토록 하고, 유통조사 지역 확대 요구 (통보)
- ② 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조사를 위해 재배중인 식물체 시료수거 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료수거 방법 개선 요구 (개선)

일련번호 8	미승인 LMO 수입·판매업체 사후조치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종자산업지원과

- 미승인 LMO가 혼입된 종자를 수입·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고발조치 하여야 하나,
- 최초 LMO 환경방출 사고에 따른 대국민 우려 해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때문에 4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해결에 우선을 두며 처리하였음

국립종자원

미승인 LMO 수입·판매업체의 LMO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관련자 “주의” 조치 요구 (주의)

일련번호 9	육묘업 등록 관련 사전교육 및 실태파악 노력 미흡		
처분요구	통보, 권고	관계기관	종자산업지원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2017. 6. 27.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서울대)은 육묘업 등록 제도 시행(2017. 12. 28.) 까지 6개월의 기간 밖에 없음을 감안, 종자산업지원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수요조사 등을 거쳐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수자에 대하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나 미흡함
- 동 교육과정은 신청자가 교육비를 100% 납부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수입대체경비 항목이 있어야 하나, 종자원과 농촌진흥청은 동 항목이 없어 현재까지 교육과정 운영 미흡
- 2017. 12. 28.부터 육묘업 등록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18. 3. 9. 현재 육묘업을 등록한 자는 358명으로 육묘업 등록 사전단계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2017년에 교육을 이수한 1,518명(2018년 이수자 943명 제외) 중 23.6%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임

국립종자원

- ① 수입대체경비 항목 신설 등 육묘업 등록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 ② 육묘업 미등록 원인 등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자생명산업과와 협의하여 육묘업 등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 마련 요구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육묘업 등록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구 (권고)
- ② 농촌진흥청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10 벼 보급종 우선공급제도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식량종자과
------	--------	------	-------

-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르면 벼 보급종 우선공급 시 신청량 기준 비율대로 공급량을 배정하고, 전년도 부정하게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보급종 배정 시 임의로 공급량을 배정하고 부적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제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른 제한조치로는 부적정한 우선공급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립종자원

- ① 벼 보급종 종자 우선공급 배정 및 부적격업체에 대한 제한조치를 규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강구 (통보)
- ② 보급종을 부정정하게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요구 (개선)

일련번호 11	보급종 사후점검 시 종자검사 위반자에 대한 조치규정 불합리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식량종자과

-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 · 감독지침」에 따르면 보급종 사후점검을 통해 검사원의 검사결과가 검사허용오차한도를 초과한 경우 위반한 검사비율에 따라 개인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식량종자과는 최근 3년간 32건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4건 이외에는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지 않았음
- 그러나 현재 처분요건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교육실시 등을 통해 종자검사 역량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국립종자원

종자검사 위반사항 발생 시 처분조치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처분요건을 완화하고 종자검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종자검사원의 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개선)

일련번호 12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통보	관계기관	식량종자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보조사업자인 지자체로부터 실적보고서 관련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받지 않아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정산을 완료함

국립종자원

- ①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식량종자과에 “부서주의” 조치 (부서주의)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통보)

일련번호 13	부산물 등 중량감소 규정 미비 및 매각 시 매각물량 측정방식 불합리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식량종자과

- 부산물 등은 보관기간에 따라 수분감소로 인해 중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 관련 예규에 수분변동으로 인한 중량 변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매각공고일과 출고일의 중량이 달라 실제 매각일에 측정한 중량으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매각공고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매입업체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국립종자원

부산물 등 매각 시에 수분변동에 따른 매각량 중량변동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출고일에 실제 계측한 중량대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매각량 물량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관련 예규를 합리적으로 개정 (개선)

일련번호 14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시기 조정 및 벼 보급종 공급잔량 활용방안 필요		
처분요구	권고, 통보	관계기관	식량종자과,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 2018년도 벼 보급종 공급계획 대비 공급량이 줄어들어 2,389톤의 공급잔량 발생하여 1,067백만원의 손실이 추정됨(종자공급 시 실제 판매금액은 공급잔량 매각 시의 판매금액보다 kg당 446.5원 높음)
 - 공급계획보다 공급량이 적은 주요 원인은 벼 보급종 공급계획 수립시기 이후에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이 결정되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임
- 벼 보급종 공급잔량이 많을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시기를 벼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수립시기 이전(1~2월 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권고)

국립종자원

벼 보급종 공급잔량의 경제적 활용가치를 검토하여 공급잔량 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통보)

일련번호 15	벼 보급종 생산기준량 및 초과생산량 처분방식 부적정		
처분요구	권고, 개선	관계기관	전남지원, 식량종자과

- (전남지원) 2017년 벼 보급종 4,647톤을 생산하기 위한 채종면적 산출 시 10a당 생산량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남지역의 2016년도(2017 생산 계획 수립 전년도) 680kg(또는 최근 3개년 평균 681kg)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 통계청 발표 전남지역 생산량인 680kg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도 불명확한 평균 545kg를 적용하는 등 10a당 생산기준량을 과소하게 적용하고 있음
- 종자원에서는 매년 수매 후 발생하는 초과생산량에 대한 처리방법을 종자원 예규인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또는 지침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 관련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지침도 없는 관계로 농가가 자체적으로 공공비축 및 RPC 등에 판매하여 농가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국립종자원

- ① 종자원이 정한 10a당 기준생산량 550kg을 통계청의 지역별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각 지원별 10a당 적정 기준생산량 상향조정 요구 (권고)
- ② 초과생산량에 대한 처리방법(농가 판매, 회수 후 매각 등)을 검토한 후 관련규정 개정 요구 (개선)

일련번호 16	벼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개선	관계기관	전남지원, 식량종자과

- 벼 포장검사 시에는 관련요령에 따라 필지 면적별로 표본조사구수를 결정한 후 표본조사구별로 1㎡당 이삭(주)수 및 이품종·이종종자·이형주를 조사하여 필지별 조사주수 및 품종순도를 정확하게 산출한 후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전남지원은 표본조사구별로 1㎡당 이삭(주)수를 조사하지 않고 모든 단지에 단지별로 일괄 적용(2개 단지 135필지는 400주, 1개 단지 106필지는 320주, 1개 단지 79필지는 350주로 일괄 적용)하여 필지별 조사주수를 산출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벼 종자검사는 종자검사 규격에 따라 실시하되, 특히 발아율은 시료를 종자 보급 시의 상태인 수분 14.0% 이하인 상태에서 채취하든지 시료가 수분이 높을 경우 14.0% 이하로 건조시킨 후에 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 전남지원의 2017년도에 발아검정을 실시한 시료 중 최고수분은 16.5%(신기단지 농가)였으며, 일부 단지(소룡)의 경우도 대부분이

14.0% 이상으로 종자검사 규격인 수분 14% 이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국립종자원

- ①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주의” 조치 요구 (주의)
- ② 검사 전에 이론·실습 교육과 자체점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 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구 (개선)

일련번호 17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활용 미흡	
처분요구	시정, 통보	관계기관	품종보호과

- 종자원의 「품종보호 출원과 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 기준」에 따르면 특성조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특성조사기준을 국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365개 작물(2017. 12.)의 특성조사요령이 제·개정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는 222개 작물만 등록되어 있고 143개 작물이 누락되어 있으며,
 -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21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이 UPOV에 제안되거나 등록추진된 실적이 없는 실정임

국립종자원

- ① 누락된 특성조사기준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 요구 (시정)
- ② 자체적으로 제정한 특성조사기준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18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 부적정
----------------	------------------------

처분요구	부서주의, 권고, 통보	관계기관	품종보호과
------	--------------	------	-------

- 종자원의 「생산물 처분요령」에 따르면 시험·연구사업 수행하여 발생한 생산물에 대해 생산량을 산정하고, 시험소요량·수입량·폐기량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물 처분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2015년부터 304건의 시험에서 발생한 생산물에 대한 관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 재배시험 실시 후 생산물 처분이 본원 및 지원별 동일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국립종자원

- ① 생산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품종보호과에 “부서주의” 요구 (부서주의)
- ② 전산화 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을 통해 생산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 ③ 재배시험을 실시 후 생산물 처분이 본원 및 지원별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일련번호 19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개선	관계기관	품종보호과, 서부지원

- 종자원의 「휴일 및 야간의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자원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외부인 출입에 의한 작물의 훼손 및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한 관리원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토록 되어있는데도,
 - 품종보호과와 서부지원은 품종보호 출원 작물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실정이며,
 - 규정에서 정한 관리원 근무일지가 현실과 맞지 않아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미작성되고 있는 실정임

국립종자원	
① 서부지원 및 품종보호과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 요구 (통보) ② 국립종자원 「휴일 및 야간의 재배시험 포장 및 시설 관리지침」의 관리원 근무 일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구 (개선)	

일련번호 20	실험 및 검사 등의 소요일수 산정 불합리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식량종자과

- 종자검정업무는 2017.06.28.자로 농관원에서 종자원으로 이관됨

- 농식품부 민원처리규정 별표3(실험 및 검사 등의 소요일수)의 종자검정업무 기관을 농관원에서 종자원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검정항목이 8가지인데도 발아율만 소요기간이 정해져 있어 나머지 종자 검정항목에도 소요기간을 정하여야 함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업무의 국립종자원 이관에 따른 발아율 외의 종자 검정항목도 소요기간을 산정하는 등 「농식품부 민원처리규정」 별표3을 개정 요청 (개선)

일련번호 21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종자검정연구센터

-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을 미준수함
 - 매월 실험실 안전관리 미점검
 - 고독성 시약과 일반시약을 분리 보관하지 않음
 - 실험폐기물 수거 장소를 지정하지 않음
 - 2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장비관리자 미지정

국립종자원

앞으로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처분 (주의)

일련번호 22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관계기관	서부지원

-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의 2016년도 기간제근로자(포장관리원 12명) 채용 시 최저점수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2명을 불합격 처리 함

국립종자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고” 조치 요구 (경고)

일련번호 23	경남지원 청사신축 공사비 정산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경남지원

-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환경보전비, 하도급 수수료 및 건설기계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하고 지급

국립종자원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환경보전비 1,034천원, 하도급수수료 637천원, 건설기계수수료 551천원에 대해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라 재정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 (시정)

일련번호 24	경남지원 신축청사 하자보수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경남지원

- 체력단련실의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는데도 강우시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국립종자원

체력단련실의 지붕 누수에 대해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하자보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통보)